의안번호	제 346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7월 3일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6 발의연월일 : 2023년 7월 3일

발 의 자 :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김꽃임

1. 제안이유

O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고려인 주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O 고려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O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O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포상과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

O 협 의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O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현재 충청 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 3.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 5.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지원
 - 6.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 7.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
 - 8.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 9.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 10.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 지원
 - 11.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 12.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 령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 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 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 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정책 당사자인 고려 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협의체 출석수당(연간): 100,000원 × 10명 × 2회 = 2,000천원
 -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 추계 결과 : 연간 2,000천원,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0,000천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l T	71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 출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협의체 수당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재원 조달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자체 수입 지방세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